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가단34205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9. 14.

판결 선고2018. 10.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66,930원 및 그중,
가. 49,066,93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2016.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39,523,70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39,523,7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09,066,930원 및 그중 ① 대위변제금 49,066,930원에 대하여는 2016. 8. 3.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6. 11. 1.까지(1일)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대위변제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2016.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6. 5. 30.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무자 주식회사 시엠팜,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6. 1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피고 B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고, 피고 A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원고 등 피고 B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사해행위가 있는 후 수익자가 목적물에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되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반환의 방법이 되는 것인바, 피고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145,000,000원에서 소외 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5,476,294원(= 80,307,934원 + 25,168,360원)을 공제한 39,523,7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9,523,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무엇보다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마 제3 내지 9, 14 내지 17, 20, 21,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4. 2. 4. 마산대학교 보건전문학과를 졸업한 후 2014. 5. 22.경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에 입사한 직장인인 점, ② 창원시의 창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는 2016. 5.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고, 지인인 피고 C에게 그 매수를 권유한 점, ③ 이에 피고 C은 D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평균시세는 142,500,000원 상당이었던 점, ④ 피고 C은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35,000,000원은 2016. 6.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G동 일대의 아파트에 관하여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10일 내지 20일 이내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다수 체결되고 있었던 점, ⑤ 피고 C은 2016.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돈 99,700,000원과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35,300,000원으로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소외 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합계 106,416,020원{= 81,023,916원(= 대출원리금 80,307,934원 + 중도상환수수료 715,982원, 피고 B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25,392,104원(=

대출원리금 25,168,360원 + 중도상환수수료 223,744원, 주식회사 시엠팜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상환받은 점, ⑥ 그 후 피고 C은 2016. 8. 22.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25,000,000원, 기간 2016. 8. 26.부터 2018.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6. 8. 26.
 H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101,027,153원(= 원금
 99,700,000원 + 이자 1,327,153원)을 상환한 점, ⑦ 한편, 피고 C 및 공인중개사 D와 피고 B이
 서로 아는 사이라거나, 피고 C이 피고 B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공인중개사 D와 피고 C 측이 서로 금전거래를 하는 등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 C의 선의 인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피고 B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C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률

별지

1) 원고는 대위변제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이 2016. 11. 1.이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